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

제정 2003.10. 7. 규칙 제408호 개정 2012. 3.28. 규칙 제596호 개정 2014. 1.28. 규칙 제645호 개정 2018. 4.27. 규정 제759호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생활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조직) ① 생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생활관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학생 지도 및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감과 직원을 둔다.

제2장 생활관 운영위원회 및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

- 제4조(생활관 운영위원회) ① 생활관 생활, 입·퇴사, 경기 전 식사(특별식)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학처장, 훈련처장, 사무국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 -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생활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생활관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3. 생활관 입·퇴사자 선정에 따른 호실 배정에 관한 사항
 - 4. 학생식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입사자 규정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 -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·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5조(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) ①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(이하 "성과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직원 3명, 사업시행자 3명, 생활관 사감 또는 입사자 3명, 관련 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.
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생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
- ⑤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체 성과 점검 및 확인
- 2. 시정 조치에 관한 평가
- 3.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에 대한 유용성, 안정성, 내구성 및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평가
-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생활관 생활

- **제6조(입사자 활동 및 생활수칙)** ① 입사자의 활동은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 의 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는데 있으며,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.
 - ② 입사자는 생활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은 별표와 같다.
- 제7조(생활관 이용) 생활관의 시설 이용은 입사자에 한한다.
- 제8조(호실 배정 및 변상) ① 입사자의 호실은 학년별, 종목별, 층별 연1회 이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시 또는 임시 배정해야 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정한다. ② 배정된 호실은 입사자간의 동의 등에 따라 임의로 바꾸거나 호실 내의 시설 및 비품을 변경할 수 없다.
 - ③ 입사자의 고의 · 과실로 시설물(기물 포함)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 야 한다.

제9조(일일 생활) 입사자의 일일 생활은 다음과 같으며, 계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일 과	시 간	비고
기 상	05 : 30	
조조훈런	06 : 00 - 07 : 30	
조 식	07 : 30 - 08 : 30	
오전 강의	09 : 00 -	
중 식	12 : 00 - 13 : 30	
오후 강의	14 : 30 - 17 : 20	
석 식	18 : 00 - 19 : 00	
휴 식	19:00 - 20:30	
실내정리정돈	21 : 00 - 21 : 30	
 점 호	21 : 30	
소등 및 취침	23 : 00	

- 제10조(식사제공) ① 입사자에게는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다.
 - ② 학생식당 식사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1조(면회) 입사자의 면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제12조(외부인 출입금지) 입사자는 생활관 내에 외부인을 출입시킬 수 없다. 다만, 행사 (졸업식, 입학식 등)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출입시킬 수 있다.
- 제13조(외출·외박) ① 정기 외출 및 외박은 각 부 주장이 대상 인원을 조사하여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주중의 외출·외박은 지도교수에게 허락을 받은 후, 외출·외박증을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4조(화기 단속 및 청소) 입사자는 각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- 제15조(학생자치운영회) ① 입사자로 구성된 학생자치운영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학생자치운영회는 사감의 학생지도 활동을 보조하며,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장 입 · 퇴사 등

- 제16조(생활관 입·퇴사) ① 호실 수용 능력에 따라 생활관 입·퇴사는 지도교수의 의견을 받아 정한다. 다만, 호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 숙소의 호실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·퇴사는 매 학기 10일 이전에 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 - 1. 연간 1회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자
 - 2. 부상 등으로 운동을 재개할 수 없는 자
 - 3. 개인적인 사유로 운동을 포기한 자
 - ③ 학기 중 입·퇴사는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입·퇴사시킬 수 있다. **다만, 해당** 학생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 - ④ 입사자는 소정의 입사 서약서와 학생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입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입사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.
 - 1. 「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」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
 - 2.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」제16조에 해당하는 자
 - 3. 법정 감염병 및 보균자
 - 4. 유행성 안질 등 생활관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제18조(퇴사 조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 조치한다.
 - 1.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(징계기간 동안 퇴사)
 - 2. 제6조제2항의 위반 사항 중 퇴사에 해당하는 자
 - 3. 질병 치료 또는 외부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
 - 4. 생활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
 -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 범위에 따라 최저 180일에서 최고 365일 퇴사 조치할 수 있다.

제5장 경기 전 식사

- 제19조(경기 전 식사) 대회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을 위하여 경기 전 식사(이하 "특별식"이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20조(대상 및 기간) ① 특별식은 국가대표 선발전 또는 동등 이상의 대회에 한하며, 인원은 출전하는 최소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 - ② 특별식은 대회출전 2주 이내로 제공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2주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.
- 제21조(특별식 식단) 특별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며, 식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체력증강식 : 장거리 운동(도로사이클, 중장거리, 역도 등)
 - 2. 체중감량식 : 체급경기(복싱, 레슬링, 유도, 태권도, 역도 등)
- 제22조(특별식 신청) 특별식은 각 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생활관장이 결정한다.

부 칙 (제408호, 2003, 10, 7,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. 7. 1부터 적용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 종전의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(2001. 9. 1. 규칙 제347호)에 의거 시행한 생활관 생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- ③ (다른 규정의 변경)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장제2절(제23조 내지 제28조)을 삭제한다.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학칙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에 의거 본교의 육성 종목 지정 및 출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부 칙 (제645호, 2014, 1, 2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759호, 2018. 4. 2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

(제6조제2항 관련)

위 반 내 용	감점	벌 칙	비고
○ 물리적행위(폭력, 얼차려 등) ○ 성폭력, 언어폭력(집단따돌립, SNS 포함) ○ 음주, 흡연 ○ 절도, 도박 ○ 무단이탈 및 월담 ○ 교직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부도덕 행위	30	○ 「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」 제16호에 따른 징계 - 제적 - 무기정학 - 유기정학 - 근신	교학처에 징계요청
 비윤리적 집단의사표시 행동 (집단선동, SNS선동 등) 화재유발 및 화재유발 물품사용 (버너, 전기난로, 전기장판, 전기히터, 전기핫팩 등) 무단 미복귀 	20	(공통부문)	
 금지된 물품소지 술, 담배, 도박용품, 화기유발 물품 등 허위보고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외부인(퇴관생)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 	15	 5점: 반성문 제출 및 외출금지 1주 15점: 외출외박금지 2주 20점: 외출외박금지 4주 30점: 최저180일, 최고365일 퇴사 ※생활관 내·외부 청소 등 봉사활동 7-10일이상 	
소등 불이행소란 및 소음행위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학생자치회 직무방해	5		

[※] 벌칙으로 인한 퇴사기간 동안 생활관 식당 이용 금지

[※] 위 벌칙은 태도 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